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09
----------	-------

발의연월일 : 2025. 12. 12.
발의자 : 한민수 · 박상혁 · 홍기원
이연희 · 송옥주 · 허영
이해민 · 김기표 · 박해철
김남희 · 박군택 · 이정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를 기본 취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통해 유통 금지를 넘어 사이트에 단순히 접근 · 열람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규제로 작동하고 있음.

최근 학계와 언론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북한 및 통일 관련 공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 · 열람을 허용함으로써 정보 유통 규제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습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균형있는 이해를 제고하고자 함
(안 제44조의7제3항 단서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8호의 정보에 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해당 정보에 단순 접근·열람만 협용되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